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안상훈 · 서천호
김기웅 · 이종배 · 이성권
박준태 · 엄태영 · 조은희
권영진 · 나경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·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'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'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,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처벌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·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'1년 이상'에서 '3년 이상'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,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86조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